

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0. 10. 12. ~ 10. 19.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0월 19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gowoon@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김미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3315호
----------	--------

○ 발의연월일 : 2020. 10. 8.

김미애 의원

김미연 의원

○ 발 의 자 : 이복남 의원

이영란 의원

박혜정 의원

장숙희 의원

1. 제정이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 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책무. (안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안 제4조)
- 실태조사. (안 제5조)
- 경제활동 촉진사업. (안 제6조)
- 사무의 위탁. (안 제7조)
- 시행규칙. (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나.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다. 타 지자체 입법례 : 전국 106개 지자체(광역시·특별 17, 기초 89)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순천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으로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순천시장은 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경제활동 촉진사업)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2.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진출 지원
3.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4.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5.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6.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7.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상담, 정보제공 등 창업 지원
8.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29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10. 6.

1. 개정이유

- 시 소관 기존규제에 대한 재검토, 주민·기업의 규제입증요청, 기존규제의 위원회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규제혁신에 대한 적극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 기존규제의 재검토 규정 신설(안 제9조)

- 기존규제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 하는 규정 신설

○ 규제입증의 요청 규정 신설(안 제10조)

- 누구든지 시 소관 기존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존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위원회가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1조)

- 기존규제 재검토·규제입증요청 사항 등에 대해 위원회 심사 규정 신설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규제 정비의 요청)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9. 4. ~ 9. 23.)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9. 29.(여성가족과-2034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9. 4.(기획예산실-1206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9. 4.(순천시 공고 제2020-1888호)

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행정규제 개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시장”을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9조를 제12조로 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기존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기존규제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제10조(규제입증의 요청) 누구든지 시 소관 기존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존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기존 규제의 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제10조에 따라 규제입증 요청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 규제에 대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u>시장</u>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 ⑤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u>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행정규제개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순천시장</u>(이하 “시장”이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기존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기존규제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제10조(규제입증의 요청) 누구든지 시 소관 기존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존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기존 규제의 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개정안
제9조(시행규칙) (생략)	기존 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제10조에 따라 규제입증 요청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 규제에 대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295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10. 6.

1. 개정이유

-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유족회 및 시민단체, 행정기관의 협의체 필요성이 대두됨
- 여수·순천 10·19사건의 위령사업 및 추모사업, 특별법 제정 등의 원활한 추진과 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한 여순 10·19 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순10·19민관협의회 설치(안 제6조)
- 협의회의 기능(안 제7조)
 - 민간인 희생자 관련 위령사업 및 추모사업
 - 민간인 희생자 피해자 조사 및 특별법 제정 등에 관한 사항
- 협의회의 구성(안 제8조)
 -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의 임기(안 제9조)
- 실무위원회 구성(안 제14조)
 - 실무위원장 포함 7명 이내 구성, 실무위원은 위원 중에 실무위원장이 지명
 - 각종 위령사업 및 기념행사 기획·추진 등 실무업무 추진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8. 1. ~ 2020. 8. 21.)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7. 27.(여성가족과-1515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7. 29.(기획예산실-1029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7. 30.(순천시 공고 제2020-1618호)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제16조로 하고,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여수·10·19민관협의회 설치) 시장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특별법 제정 등 관련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여수·10·19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인 희생자 관련 위령사업 및 추모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민간인 희생자 피해자 조사 및 특별법 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호선한다.

② 위원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 대표
3. 시민·사회단체 및 각 분야별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 선정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협의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한 경우
6.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계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등)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각종 위령 및 기념사업의 실무업무 추진을 위해 협의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은 위원 중에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무위원회를 소집하여 각종 위령사업 및 기념행사의 기획·추진 등 실무업무를 추진하며, 회의결과는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6조(여순10·19민관협의회 설치) 시장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특별법 제정 등 관련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여순 10·19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인 희생자 관련 위령사업 및 추모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민간인 희생자 피해자 조사 및 특별법 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호선한다. ② 위원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순천시회의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 대표 3. 시민·사회단체 및 각 분야별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현행	개정안
	③ 위촉직 위원 선정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협의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한 경우 6.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제1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현행	개정안
<신 설>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계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신 설>	제14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각종 위령 및 기념사업의 실무업무 추진을 위해 협의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장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6조(시행규칙) (생략)</u>	<u>은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u> <u>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은 위원 중에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u> <u>③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 <u>④ 실무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무위원회를 소집하여 각종 위령사업 및 기념행사의 기획·추진 등 실무업무를 추진하며, 회의결과는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u>제15조(수당 등)협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u> <u>제16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u>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30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10. 6.

1. 개정이유

- 현충정원 조성 이후 사망유공자에 대한 추가 명각 시기를 규정하고 명예수당 지급대상에서 누락되었던 애국지사·순국선열의 유족 및 5.18 민주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충정원의 추가 명각 시기 신설(안 제7조)
-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의 유족 보훈명예수당 지급(안 제12조)
- 5.18 민주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안 제12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8. 31. ~ 9. 21.)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8. 6.(여성가족과-1597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8. 21.(기획예산실-1136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8. 25.(순천시 공고 제2020-1805호)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부여할 수 있다”를 “부여하거나, 명각(銘刻)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에 따라 지정된 ‘현충정원’의 명각(銘刻)은 5년마다 추가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제4조제1항제3호”를 “제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 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관·전시 관·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희생·공 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7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부여하 거나, 명각(銘刻)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74조의2에 따라 지정된 ‘현충정원’의 명각(銘刻)은 5년마다 추가한다.
제12조(지급대상) ① 제11조에 따라 보 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시 관내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사람 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1명에 한정 하여 지급하고 제15조에 따른 중지 사유 발생시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 계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 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 4. ~ 6. (생략) <신설>	제12조(지급대상) ①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제4조제1항제1호----- ----- ----- 4. ~ 6. (현행과 같음) 7.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12조(지급대상) 제1항 제3호 및 제7호

3. (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
7. (신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2. 비용추계의 전제

○ 보훈 명예 수당 대상에 순국 및 애국지사 유족과 5.18 민주유공자 추가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세출	223,200	40,800	44,400	44,400	46,800	46,8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시 비	223,200	40,800	44,400	44,400	46,800	46,8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산출근거

■ (2021년) 34명 × 100,000원 × 12개월 = 40,800천원

- 순국 및 애국지사 유족 24명, 5.18 대상자 10명

※ 총비용 : 864명 × 100,000원 × 12개월 = 1,036,800천원

- (2022년) 37명 × 100,000원 × 12개월 = 44,400천원
 - 순국 및 애국지사 유족 24명, 5.18 대상자 13명
 - ※ 총비용 : 867명 × 100,000원 × 12개월 = 1,040,400천원
- (2023년) 37명 × 100,000원 × 12개월 = 44,400천원
 - 순국 및 애국지사 유족 24명, 5.18 대상자 13명
 - ※ 총비용 : 867명 × 100,000원 × 12개월 = 1,040,400천원
- (2024년) 39명 × 100,000원 × 12개월 = 46,800천원
 - 순국 및 애국지사 유족 24명, 5.18 대상자 15명
 - ※ 총비용 : 869명 × 100,000원 × 12개월 = 1,042,800천원
- (2025년) 39명 × 100,000원 × 12개월 = 46,800천원
 - 순국 및 애국지사 유족 24명, 5.18 대상자 15명
 - ※ 총비용 : 869명 × 100,000원 × 12개월 = 1,042,800천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시민복지국 사회복지과

과장 김미자(☎ 749-6180)

사회복지팀장 정 미(☎ 749-6220)

순천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330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10. 6.

1. 제정이유

-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및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통합돌봄 선제적 대응
-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역사회 통합돌봄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의체 및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7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8. 31. ~ 9. 21.)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9. 1. (여성가족과-1801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0. 6. 19. (여성가족과-16969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8. 24. (기획예산실-11420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8. 31. (순천시 공고 제2020-1821호)

순천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하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 한다)이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재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통합돌봄 교육, 홍보,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지원
가.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개선

- 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돌봄 주택 제공
- 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비 지원
- 2.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
 - 가. 방문 건강관리 지원
 - 나.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 다. 맞춤 운동 지원
- 3. 건강한 재가 요양돌봄 지원
 - 가. 요양 및 돌봄서비스 지원
 - 나. 영양관리를 위한 식사 지원
 - 다. 병원 및 일상생활 이동 지원
 - 라.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지원
- 4.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 가. 성과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및 연구용역 사업
 - 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 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 사업
 - 라. 주민 참여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례조정회의) ① 시장은 통합돌봄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통합돌봄 사례조정 회의체(이하 “사례조정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욕구사정 및 서비스 계획수립·조정
-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원개발, 서비스 연계 방안
-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례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역사회 통합돌봄 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된 지역의 공통 과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직종·다기관 간 연계·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에 맞는 서비스와 정책을 제안·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의체(이하 “협의

체”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다직종 다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가 인력 구성 지원
3. 기관 간 역할분담 및 조정
4.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조성에 필요한 정책의제 제안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 내 복지·보건·의료 등 통합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의 대표자
나.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당사자 단체 대표
다. 대학교수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과 관련한 자문이 가능한 전문가
라. 사례조정회의 구성원의 대표

마.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위원이 안전의 당사자 등이거나 당사자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안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공사·용역수행, 감정(鑑定)을 한 경우
3. 위원이 안전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안전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 등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의 등을 중단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지체 없이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자문단 구성) ① 시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이용료 부담 및 감면) 시장은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비용 또는 이용료를 그 수혜자에게 일부를 부담하게 하거나 감면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안 제5조(지원사업)

1.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지원
 - 가.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개선
 - 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돌봄 주택 제공
 - 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비 지원
2.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
 - 가. 방문 건강관리 지원
 - 나.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 다. 맞춤형 운동 지원
3. 건강한 재가 요양돌봄 지원
 - 가. 요양 및 돌봄서비스 지원
 - 나. 영양관리를 위한 식사 지원
 - 다. 병원 및 일상생활 이동 지원
 - 라.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지원
4.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 가. 성과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및 연구용역 사업
 - 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 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 사업
 - 라. 주민 참여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2. 비용추계의 전제

○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정책 추진

-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독립생활 지원 등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총 비용(a-b)	9,952,500	1,990,500	1,990,500	1,990,500	1,990,500	1,990,500
세입(a)	—		—	—		
세출(b)	9,952,500	1,990,500	1,990,500	1,990,500	1,990,500	1,990,5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9,952,500	1,990,500	1,990,500	1,990,500	1,990,500	1,990,500
국 비(50%)	4,976,250	995,250	995,250	995,250	995,250	995,250
도 비(15%)	1,492,875	298,575	298,575	298,575	298,575	298,575
시 비(35%)	3,483,375	696,675	696,675	696,675	696,675	696,675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2020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금액	산출기초	비고
계	1,990,500		
케어안심주택 운영	245,600	122,800천원*2개소	
주거안전편의시설설치	400,000	4,000천원*100가구	
일반진료사업	15,600	118천원*132회	
한방치료사업	20,600	118천원*175회	
방문운동지도사업	50,400	70천원*30명*24회	
건강식사지원사업	351,300	5.5천원*175명*365일	

구 분	금액	산출기초	비고
일상생활이동지원(교통카드지급)	104,000	20천원*100명*52주	
스마트 돌봄(IOT)	70,000	기기설치 : 270천원*100대 운영비 : 43,000천원	
마음썸 가사돌봄	100,800	2,100천원*4명*12월	
이웃사촌돌봄 활동단 운영	438,000	8,590원*72명*59시간*12월	
통합돌봄 홍보(보고회, 회의, 포상금 등)	74,600	홍보 및 보고회 등	
통합돌봄 용역, 인건비, 교육 등	119,600	용역 : 22,000 가간제 근로자(3명) : 50,065 교육, 여비 등 : 47,535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과 과 장 김 선 순 (☎ 749-6170)

통합돌봄팀장 장 명 인 (☎ 749-4220)

담당자 장 숙 희 (☎ 749-6231)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30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10. 6.

1. 개정이유

- 청년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 설치·운영 및 청년 정신건강사업의 민간 위탁 규정 마련
-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의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내용 명시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안전보장 등 내용 포함

2. 주요내용

- 명칭 및 위치(안 제3조)
- 사업내용(안 제4조)
-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2조)
- 종사자 안전보장 및 비밀누설의 금지(안 제21조~제22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8. 31. ~ 9. 21.)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8. 27.(여성가족과-1757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8. 24.(기획예산실-1143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8. 31.(순천시 보건소 공고 제2020-11호)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라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은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순천시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진단, 기획 및 자원조정
2.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3.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을 위한 응급체계 구축
4. 정신질환자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성별, 생애주기별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7.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 교육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자문
8.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9.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
10. 청년정신건강센터 등 필요한 정신건강 기구의 설치·운영
11.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운영 능력을 갖춘 정신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수탁운영자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 능력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건강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제8조(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운영자가 관계기관의 처분 등을 받는 경우
2. 수탁운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등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운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시설, 및 운영제반사항을 지도 감독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 조사 또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또는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회계 및 결산) ① 센터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산·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및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4.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 또는 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신건강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소 정신건강업무 담당 공무원
2. 센터 소속 총괄 담당자
3. 임상자문의 등 전문가
4. 관계분야의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0조(수당 등)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센터 종사자의 안전보장)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센터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건강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종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3314호
----------	--------

발의연월일 : 2020. 10. 8.

발 의 자 : 박종호 의원

1. 제정이유

- 순천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순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취업
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나. 책무. (안 제3조)
- 다. 취업지원 대책 수립. (안 제4조)
- 라. 실태조사. (안 제5조)
- 마. 우선채용. (안 제6조)
- 바. 불이익 금지. (안 제7조)
- 사.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안 제8조)
- 아. 행정·재정 지원. (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나.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 다. 타 지자체 입법례 : 전국 19개 지자체(광역시11, 기초8 / 전남 : 해남)

순천시 고등학교졸업자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순천시 지역 고등학교졸업자들의 취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순천시에 거주하는 자로 순천시 관내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역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순천시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 및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순천시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취업지원 대책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3.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산업의 동향,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우선채용)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정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기업·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기업·단체 등과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확대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정·재정 지원) ① 시장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과 제8조제2항의 협약을 체결한 기관·기업·단체 등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나안수 의원 대표발의)

의 번	안 호	제3316호
--------	--------	--------

발의연월일 : 2020. 10. 8.

발 의 자 : 나안수 의원
이현재 의원
문규준 의원
김병권 의원
장숙희 의원
유영갑 의원
정홍준 의원
김영진 의원
박재원 의원

1. 제정이유

- 순천시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책무. (안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4조)
- 사업. (안 제5조)
- 사무의 위탁. (안 제6조)
-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 (안 제7조)
- 창작공간 지원. (안 제8조)
- 재정지원. (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예술인 복지법」

나.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다. 타 지자체 입법례 : 전국 28개 지자체(광역시·특별13 기초15 / 전남 : 0)

순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순천시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2.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
3. 예술인의 노동환경 개선
4.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 및 사업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방향
2.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 각 호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른 순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

한다.

제8조(창작 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순천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혜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3317호
----------	--------

발의연월일 : 2020. 10. 8.

발 의 자 :

박혜정 의원	김병권 의원
나안수 의원	이현재 의원
이복남 의원	장숙희 의원
최병배 의원	남정옥 의원
이영란 의원	박재원 의원
김미연 의원	오광목 의원
김미애 의원	박종호 의원
문규준 의원	유영갑 의원
김영진 의원	서정진 의원
허유인 의원	강형구 의원
박계수 의원	정홍준 의원
이명옥 의원	오행숙 의원

1. 제안이유

- 전남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이자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가 인접한 전남 동부권의 취약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제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책무 (안 제1조 ~ 제2조)
- 유치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3조)
- 의과대학 유치사업 (안 제4조)
- 행정·재정지원 (안 제5조)
- 의대유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6조 ~ 안 제11조)
- 협조요청 등 (안 제12조)
- 협력체계 구축 (안 제13조)
- 홍보 등 (안 제14조)
- 포상 (안 제15조)
- 시행규칙 (안 제16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사업 등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이자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가 인접한 전남 동부권의 취약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한 제반 활동을 적극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순천대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시민적 참여 유도 및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교류·협력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과대학 유치사업) ①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의과대학 유치 관련 위원회 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의과대학 유치 관련 홍보 및 교섭 활동
3.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범시민 의지 결집 등 여론 조성
4. 그 밖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행정·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의과대학 유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의 협조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의대 유치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의과대학 유치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의과대학 유치 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

2. 순천대학교를 비롯한 관련 교육기관의 대표

3. 시민, 사회, 경제, 의료분야 대표

4. 유관 기관·단체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재적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순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시장은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협조요청 등) ①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단체에 자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대학교, 인근 지자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홍보 등) ①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를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관·단체 등에 의과대학 유치 활동 참여를 권장하여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행일부터 중앙정부의 의과대학 신설 확정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29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10. 6.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 시행(2020. 7. 2.)에 따라 법률 내용 및 위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법률 시행 전(2017. 12. 29.) 제정된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의 조례위임사항 규정 및 이에 따른 용어 수정·조례 보완(안 제1조~제2조, 제3조, 제5조~제16조, 제18조)
 - 목적, 정의, 상품권의발행, 유통지역,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가맹점의 등록, 상품권의 환전, 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 등록의 취소, 사용자 준수사항, 판매대행점 준수사항, 상품권 발행 및 운영위탁, 상품권 활성화 지원, 판로촉진과 홍보지원 등,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환수조치
- 상품권 종류(3천원권, 5만원권, 전자화폐-카드형, 모바일 등) 규정(안 제3조)
- 행안부 지침에 따른 가맹점환전한도(월1천만원, 최대 5천만원) 규정(안 제8조)
- 상품권 할인율 변동가능항목(명절, 재난재해,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규정(안 제14조)
- 전라남도 부정유통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른 할인구매한도(법인·단체 월 1천만원) 규정(안 제14조)
- 상품권 지급가능항목(재난 및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규정(안 제15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별첨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9. 4. ~ 9. 24.)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9. 8.(여성가족과-1848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9. 4.(기획예산실-1205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9. 4.(순천시 공고 제2020-1880호)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천사랑상품권” (이하 “상품권” 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순천시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 발행자 등” 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 이란 순천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개별가맹점 : 순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 나. 환전대행가맹점 :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순천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자
4. “사용자” 란 순천사랑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상품권의 발행)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3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

5. 전자화폐(카드형, 모바일 등)

제4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시로 귀속한다.

제5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순천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시장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동법 동조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상품권의 환전) 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에 한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③ 개별가맹점의 월간 환전한도는 월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매출액 증빙자료에 따라 최대 월5천만원까지 상향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경우에는 상품권의 환전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이상에 해당

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이 제7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9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개별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12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17조의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상품권 발행 및 운영위탁) ① 시장은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명절, 재난·재해 및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특별한 경우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시장이 정한다.

④ 상품권의 할인가매는 개인의 경우 월50만원, 연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단체의 경우 월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 개별가맹점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또는 환전 금액의 각 10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으로 정한다.

⑥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

는 시장이 보전할 수 있다.

제15조(판로촉진과 홍보지원 등) ① 시장은 상품권의 사용자 및 가맹점에
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 포인트 적립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상품권 홍보 등 마
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돌려주거나 지급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이나 관광지 등 입장료의 일부
 2.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기업체 등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점수, 출산 장려금·포상금, 농·어업인 공익수당, 전입 세대 및 대학(원)생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에 따른 정부지원금 및 기타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 ④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 ① 시장은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9조제1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위반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신고 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별 1회 1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상품권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8조(환수조치)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참고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세부내용

구 분		현행(순천시)	행안부 표준조례안	우리시 개정(안)
목적 및 정의	목적 (제1조)	지역 내 소비촉진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행안부 표준 조례(안) 적용
	정의 (제2조)	상품권, 판매대행점, 개별가맹점, 환전대행가맹점, 사용자 개념(○, 보완 필요)	상품권, 판매대행점, 개별가맹점, 환전대행가맹점, 사용자 개념 명확 규정(관계법령 명시)	행안부 표준 조례(안) 적용
발행	유효기간 (제3조3)	유효기간 5년(○) 유효기간 예외사항(×)	유효기간(5년) 및 예외사항 규정(필수위임조례)	행안부 표준 조례(안) 적용
	종류 (제3조의4)	5천원권, 1만원권, 전자화폐	-	3천원권, 5만원권, 전자화폐(카드형, 모바일 등) 추가
	유통지역 (제5조)	-	유통지역 및 예외사항 규정(필수위임조례)	행안부 표준 조례(안) 적용
판매대행점 공개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제6조)	운영대행 협약체결	판매대행 협약 체결 및 공개(필수 위임)	판매대행 협약 체결 및 공개(필수 위임)
가맹점 등록	등록 (제7조)	가맹점 등록 규정(○, 보완 필요)	가맹점 등록 규정	행안부 표준 조례(안) 적용
	등록거부 사유 (제7조)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유흥주점 등 등록 거부	등록거부 업종 또는 사업장 법령 명시	행안부 표준조례(안) 적용

구 분		현행(순천시)	행안부 표준조례안	우리시 개정(안)
가맹점 등록	등록취소 사유 및 정보공개 (제10조)	1. 거짓, 그 밖의 위법·부당한 경우 2. 유흥주점, 사행성 등 제한업종인 경우 3.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2. 등록제한업종 해당 3.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필수위임조례)	행안부 표준 조례(안) 적용
		-	등록취소시 정보공개사항 규정(필수위임조례)	행안부 표준 조례(안) 적용
환전	상품권의 환전(제8조)	개별가맹점의 월간 환전 한도 없음	월간 환전한도 (행안부 지침)	월1천만원, 매출증빙 시 5천만원까지 (행안부 지침 적용)
운영 위탁	발행 및 운영 업무위탁 (제13조)	-	발행 및 운영 위탁가능규정(임의위임조례)	행안부 표준 조례(안) 적용
상품권 활성화 지원	유통활성화 (제14조)	-	유통활성화시책 적극 시행 규정	행안부 표준 조례(안) 적용
	상품권지급 불가 (제14조 제2항)	-	상품권 지급 불가 사항 규정	행안부 표준 조례(안) 적용
	할인율 (제14조 제3항)	•100분의 10 범위 •설·추석 할인율 조정	시장이 할인율 정하도록함(필수 위임)	• 100분의 10 범위내 • 명절, 재난·재해등 달리적용
	할인가매 (제14조 제4항)	(개인)연600만원	(개인) 월30~70만원 (법인) 월1천만원 (전라남도 부정유통방지 가이드라인)	(개인) 월50만원, 연600만원 (법인) 월1천만원 (전라남도 부정유통방지 가이드라인 적용)
	보전 (제14조 제6항)	-	보전가능규정	행안부 표준 조례(안) 적용
판로촉진 및 홍보지원	상품권 지급 (제15조 제3항)	1. 공공시설이나 관광지 등 입장료의 일부 2.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기업체 등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점수, 출산 장려금·포상금, 농·어업인 공익수당, 전입 세대 및 대학(원)생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에 따른 정부지원금 및 기타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추가)
	포상 (제15조 제4항)	순천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 시민단체, 순천사랑상품권 관련 유관기관·단체 및 소상공인, 공무원 등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단체 등	행안부 표준 조례(안) 적용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297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10. 6.

1. 개정이유

-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두드림 영화관(3층) 증축에 따른 사용료 부과 근거 마련 등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 현행화(안 제3조, 제5조, 제13조, 제18조 등)
- 휴관일 변경(월요일→일요일)을 통한 원활한 업무 대응(안 제6조)
- 영화관 사용료(대관료) 부과 근거 마련 등(안 별표)
- 운영비 지원 및 회계운영, 자체운영규정에 관련된 사항 신설 등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7. 31. ~ 8. 21.)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8. 13.(여성가족과-1656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7. 31.(기획예산실-1040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7. 31.(순천시 공고 제2020-1623호)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금곡길 23(행동)” 을 “금곡길 25(행동)” 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영상편집교육실” 을 “세미나실 3”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다목적 편집실 등” 을 “다목적스튜디오, 편집실 등”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상영공간 : 두드림 영화관 등

제6조제1항제1호 중 “월요일” 을 “일요일” 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를 “연임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탁관리자” 를 “관리수탁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 을 “5년” 으로,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수탁관리자” 를 각각 “관리수탁자” 로 한다.

제20조를 제23조로 한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자체 운영규정) 관리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운영비 지원) 미디어센터 운영비는 순천시에서 지원되는 운영비와 미디어센터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2조(회계 운영) ① 관리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미디어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해야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집행에 관하여는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③ 관리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관리 및 운영 업무에 대한 수입,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를 비치, 정리해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 용 료

(제8조 관련)

구분	시 설	단위	금액(원)	비고
1층	세미나실 1	1시간	10,000	18석
2층	세미나실 2	1시간	10,000	24석
	세미나실 3	1시간	10,000	12석
	개인 편집실	1시간	5,000	
	디지털 편집교육실	1시간	20,000	16석
3층	다목적 스튜디오	3시간	30,000	
	1인 크리에이터실	1시간	5,000	
	영화관	기본 3시간	100,000	공간대여
		추가 1시간	30,000	
		기본 3시간	50,000	빔프로젝터
		추가 1시간	20,000	
		1시간	10,000	냉·난방비
		1시간	10,000	오퍼레이터

비고

1.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2. 미디어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이용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시설 사용은 해당기기 이용이 가능한 자에게 사용허가를 한다.
4. 세미나실의 배정은 사용 신청인 또는 단체의 규모에 따라 미디어센터 담당직원이 정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생략) ② 미디어센터는 순천시 <u>금곡길 23(행동)</u> 에 둔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u>금곡길 25(행동)</u> -----.
제5조(시설)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생략) 2. 교육공간 : 세미나실 1, 세미나실 2, <u>영상편집교육실</u> , 디지털편집교육실 등 3. 제작공간 : <u>다목적 편집실</u> 등 4. (생략) <u><신설></u>	제5조(시설) ----- ----- -----. 1. (현행과 같음) 2. ----- : -----, <u>세미나실 3</u> , ----- 3. ----- : <u>다목적스튜디오</u> , 편집실 등 4. (현행과 같음) 5. <u>상영공간 : 두드림 영화관</u> 등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u>월요일</u> 2. ~ 6. (생략) ② (생략)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 ----- -----. 1. <u>일요일</u>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u>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② (생략)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 -----, <u>연임할 수 있다.</u>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관리 위탁) ① 미디어센터는 시장	제18조(관리 위탁) ① -----

현행	개정안
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전문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미디어센터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u>수탁관리자</u>”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u>3년</u>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u>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u> ③ (생략) 제19조(수익사업 등) ① <u>수탁관리자</u>는 미디어센터의 사업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u>수탁관리자</u>는 미디어센터의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 및 후원금품 등은 미디어센터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 ----- ----- ----- “<u>관리수탁자</u>” ----- -----. ② ----- <u>5년</u> ----- ----- <u>다만,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u>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수익사업 등) ① <u>관리수탁자</u>----- ----- ----- -----. ② <u>관리수탁자</u>----- ----- -----. 제20조(자체 운영규정) <u>관리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u> 제21조(운영비 지원) 미디어센터 운영비는

현행		개정안		
[별표]				
사용료 (제8조 관련)				
구분	시설	단위	금액(원)	비고
1층	세미나실 1	1시간	5,000	동아리실
2층	세미나실 2	1시간	7,500	강의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디지털 편집교육실	1시간	15,000	<신설>
3층	다목적 스튜디오	4시간	40,000	
	영상편집실	4시간	10,00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비고

1.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2. 미디어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이용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시설 사용은 해당기기 이용이 가능한 자에게 사용허가를 한다.

<신설>

[별표]				
사용료 (제8조 관련)				
구분	시설	단위	금액(원)	비고
1층	세미나실 1	1시간	10,000	18석
2층	세미나실 2	1시간	10,000	24석
세미나실 3	1시간	10,000	12석	
개인 편집실	1시간	5,000		
디지털 편집교육실	1시간	20,000	16석	
3층	다목적 스튜디오	3시간	30,000	
1인 크리에이터실	1시간	5,000		
영화관	기본 3시간	100,000	공간대여	
추가 1시간	30,000			
기본 3시간	50,000	빔프로젝터		
추가 1시간	20,000			
1시간	10,000	냉·난방비		
1시간	10,000	오퍼레이터		

비고

1.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2. 미디어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이용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시설 사용은 해당기기 이용이 가능한 자에게 사용허가를 한다.

4. 세미나실의 배정은 사용 신청인 또는 단체의 규모에 따라 미디어센터 담당직원이 정할 수 있다.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298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10. 6.

1. 개정이유

- 순천시민 1년 회원권 발행에 앞서 개별법에서 규정한 무료관람 기준을 일괄 통일 정비하고,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조례 개정에 따른 감면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정비를 위해 관람료의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 박물관 유물전문 전시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문화유산의 전승과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띄어쓰기, 용어 정비(제명, 안 제1조 본문, 안 제2조제1호, 안 제5장 제목, 안 제29조 본문)
- 무료관람 기준 및 타 조례 개정에 따른 감면 조항 정비(안 제9조제1항)
- 관람료 반환 규정 관련 조항 정비(안 제10조제3항)
- 유물 전문 전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항 신설(안 제41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사업), 관광진흥법 제48조의8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9. 4. ~ 2020. 9. 24.) 결과 : 의견 제출자 있음
 - 제1조(목적) 본문, 제2조제1항, 제5장 제목, 제29조(설치) 본문의 조례 문구 띄어쓰기, 용어 정비가 누락
- 문화예술과 검토 결과 : 수용
 - 제1조 본문 :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의 관리 운영”을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으로 수정
 - 제2조제1항 :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순천시립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으로 수정
 - 제5장 제목, 제29조 본문 :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운영위원회”를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운영위원회”로 수정

9.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9. 4.(여성가족과-1205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0. 9. 24.(문화예술과-15886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9. 4.(기획예산실-1832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9. 4.(순천시 공고 제2020-1887호)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를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의 관리 운영”을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상과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가.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 나.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나. 같은 법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나. 의사자유족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다.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
12.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공무원
13.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이하 어린이
14.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5.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16.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17.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나 그 세대원
18.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
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20. 학생 교육 활동을 위해 단체 입장하는 경우 인솔하는 유치원, 어린이 집, 특수학교, 초·중·고 교원
21.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22. 한복을 착용한 사람(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에 한한다)
23. 「관광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광객 인솔 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사람
2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순천시에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입장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관람 전 관람을 취소하거나, 관람권의 착오교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할 경우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5장 제목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운영위원회”를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29조 본문 중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운영위원회”를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41조, 제42조를 각각 제42조, 제43조로 하고,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전시해설사 운영) ① 시장은 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박물관 전시물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전시해설사를 모집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전시해설사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전시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 및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순천시립뿌리깊은 나무박물관의 관리 운영</u>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u>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u>”(이하 “<u>박물관</u>”이라 한다)이란 유물전시 박물관 및 가구전시 박물관(한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 5. (생략) 제9조(무료관람 등)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u>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u> <u><신설></u>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자. 다만,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	<u>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 <u>순천시립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u>-----. 제2조(정의) -----. 1. “<u>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u>”-----. 2. ~ 5. (현행과 같음) 제9조(무료관람 등) ① -----. 1. <u>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u> 2. <u>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u> 3. ----- -----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가. <u>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u> 나. <u>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u>

현행	개정안
3.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과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4. -----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5. ----- --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가.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나.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6. -----

현행	개정안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신 설> <신 설> <신 설>	-----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나. 같은 법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현행	개정안
<u><신 설></u> 6.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7.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8. 6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u><신 설></u> 9.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어린이 <u><신 설></u> <u><신 설></u>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의사상자. 다만, 의사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나. 의사자유족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다.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1. -----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 12. ----- 공무원 13.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14.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5.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16.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17.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 정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나 그 세대원

현행	개정안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0.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순천시에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 자로서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1. (생략) ② (생략) <신 설> <신 설>	18.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 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20. 학생 교육 활동을 위해 단체 입장하는 경우 인솔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초·중·고 교원 21.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22. 한복을 착용한 사람(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에 한한다.) 23. 「관광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단체관람객 인솔 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사람 <삭 제> 2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순천시에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입장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10조(관람권) ① ~ ② (생략) ③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u>관람권의 착오교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u> ④ ~ ⑥ (생략)	제10조(관람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관람 전 관람을 취소하거나, 관람권의 착오교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할 경우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u>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장 <u>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운영위원회</u> 제29조(설치)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u>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운영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u><신설></u>	제5장 <u>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운영위원회</u> 제29조(설치) ----- ----- <u>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운영위원회</u> ----- -----. 제41조(전시해설사 운영) ① 시장은 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박물관 전시물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전시해설사를 모집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시해설사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급식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시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 및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41조~제42조 (생략)	제42조~제43조 (현행 제41조부터 제42조까지와 각각 같음)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9조(무료관람 등)제1항 중
9. 국군포로의 송환자, 11. 의사상자, 16.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17. 다자녀가정 세대중 소지자, 18. 장기기증자등, 19.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신규 무료관람 규정 추가로 입장료 수입 감소 예상
-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41조(전시해설사 운영)
⇒ 박물관 유물 전문 해설사 운영으로 세출 증가 예상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 상

- 국군포로송환자, 의사상자 등 국가유공자
-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관내 초등학교생)
- 다자녀가정 세대중 소지자, 장기기증자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유물 전문 전시해설사 인건비

나. 전 제

- 추계의 전제

세 입

- 관내 감면대상자 관람률은 순천방문 관광객 수 대비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방문 관광객 수인 0.6% 적용, 연 1회 관람 가정, 성인기준 관람료 적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우, 전국 관광지 방문 관광객 수 대비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방문 관광객 수인 0.01%로 적용, 연 1회 관람 가정, 성인기준 관람료 적용

(단위 : 명, 2019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순천시 통계)

구 분	전국 관광지 방문 관광객 수	순천방문 관광객수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방문 관광객수
인원 수	473,628,059	10,167,738	62,647

- 국군포로송환자 : 전국 133명('20.8월), 연 1회 방문, 성인기준 관람료 적용
- 의사상자 : 전국 797명('20.8월), 연 1회 방문, 성인기준 관람료 적용

-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 '17년~'19년 관내 초등학생 관람료 수입의 평균치 적용
 - 다자녀가정 세대증 소지자 : 관내 대상자 35,201명('19년)의 0.6% 관람 가정
 - 장기기증자등 : 관내 대상자 19,860명('19년)의 0.6% 관람 가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전국 대상자 1,429,891명('19년)의 0.0.1% 관람 가정
- ※ 개정안에 추가되는 국가유공 관련 무료대상자(국가유공자증 소지자)는 현재도 감면 중으로 비용추계 제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자, 특수임무유공자

세 출

- 전시해설사 인건비 : 2명, 1명당 60,000원/일, 주 3일, 54주 근무 적용

○ 추계기간 : 2021년도부터 2025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109,715	-21,943	-21,943	-21,943	-21,943	-21,943
세 입(a)	-12,515	-2,503	-2,503	-2,503	-2,503	-2,503
국군포로송환자	-665	-133	-133	-133	-133	-133
의사상자	-3,985	-797	-797	-797	-797	-797
관내 초등학생	-5,505	-1,101	-1,101	-1,101	-1,101	-1,101
다자녀가정	-1,055	-211	-211	-211	-211	-211
장기기증자등	-595	-119	-119	-119	-119	-119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10	-142	-142	-142	-142	-142
세 출(b)	97,200	19,440	19,440	19,440	19,440	19,440
전시해설사 운영	97,200	19,440	19,440	19,440	19,440	19,44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97,200	19,440	19,440	19,440	19,440	19,440
시 비	97,200	19,440	19,440	19,440	19,440	19,440

5. 비용추계 상세내역

가. 세입 감소

○ 국군포로송환자

- 1,000원(성인)x133명x1회=133,000원

○ 의사상자

- 1,000원(성인)x797명x1회=797,000원

○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관내 초등학생)

- (952,400원+1,388,100원+964,000원)÷3=1,101,500원

○ 관내 다자녀가정 세대중 소지자

- 1,000원(성인)x35,201명x1회x0.6%=211,206원

○ 관내 장기기증자

- 1,000원(성인)x19,860명x1회x0.6%=119,160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000원(성인)x1,429,891명x1회x0.01%=142,891원

나. 세출 증가

○ 유물전문 전시해설사 운영 비용

- 60,000원/명x주3일x54주x2명=19,440,000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749-6788)

박물관팀장

유향연(☎ 749-8863)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29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10. 6.

1. 개정이유

-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순천시민 1년 회원권 도입
- 무료입장 기준 통일 및 국가유공자 등 감면규정 정비 필요
- 무료 해설에 따른 해설비 삭제, 주차료 및 주차 이용시간 변경 필요

2. 주요내용

- 순천시민 1년회원권 신설(안 제4조의3)
 - 순천시민 대상으로 5개 주요 관광지 1년간 1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도입
- 관광지별 무료입장 기준 동일하게 적용토록 정비(안 제6조, 별표6)
 - 순천시에 거주하는 만 7세 이상 및 만 12세 이하 사람 무료 추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 교원, 어린이날 입장하는 아동,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한복을 착용한 사람(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에 한한다) 무료 추가
 -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또는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하고 단체 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사람 추가
- 국가유공자 등 관광지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안 제6조, 별표6)
 -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 정비계획에 의거 근거규정 정비
 - 8개 법령(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의사상자법, 국군포로송환법)
- 해설사 이용료, 주차료 현행화 및 이용시간 조정(안 별표2, 별표3)
 - 문화관광해설사 무료 해설제공으로 이용료 삭제
 - 드라마촬영장 주차료 및 이용시간 현행화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8. 31. ~ 9. 20.)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8. 30.(여성가족과-1780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8. 30.(기획예산실-1175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8. 31.(순천시 공고 제2020-1846호)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초등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를 “초등학생 및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3세 이상 18세 이하”를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19세 이상 64세 이하”를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로, “65세”를 “만 65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20:00”을 “18:00”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순천시민 1년 회원권) 시장은 순천시민의 관광복지를 위해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 대해서는 별표5와 같이 순천시민 1년 회원권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제4항 중 “통합입장권”을 “통합입장권, 순천시민 1년 회원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개방시간까지”를 “개방시간까지, 순천시민 1년 회원권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6조 제목을 “(입장료, 이용료 면제)”에서 “(입장료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및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6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신분증,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입장하여야 한다.
- ③ 드라마 촬영장 입장료는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하여 50%를 감면한다.

④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별표2 및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5 및 별표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른, 유효기간내의 ‘순천시민 1년 회원권’을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관람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른, 유효기간내의 ‘순천시민 1년 회원권’을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관람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른, 유효기간내의 ‘순천시민 1년 회원권’을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관람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른, 유효기간내의 ‘순천시민 1년 회원권’을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관람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별표 2]

주 차 료(제4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관광용시설별	구 분	요 금	비 고
드라마촬영장	소 형	1,000	11인승 미만, 2.5톤 이하 화물차
	중 형	2,000	11인승 ~ 24인승, 2.5톤 초과 5톤 이하 화물차
	대 형	3,000	25인승 이상 5톤 초과 화물차

<비 고>

1. 주차요금의 경감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

2. 주차요금의 면제

가. 국민과 그 수행원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록표를 부착한 차량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

다.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별표 3]

이 용 료(제4조제3항 관련)

☐ 드라마촬영장

(단위 : 원)

구 분	영 화	드 라 마	비 고
이용료	2,000,000	800,000	1일 기준

※ 이용료 1일 기준은 00:00 ~ 24:00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 시티투어(차량이용)

(단위 : 원)

구분	어 른	청소년 및 군인	어 린 이	비고
요금	5,000	3,000	2,000	

[별표 5]

순천시민 1년 회원권 요금(제4조의3 관련)

(단위 : 원)

구 분	어 른	청소년 및 군인	비 고
순천시민 1년 회원권	10,000	10,000	

※ “순천시민 1년 회원권”이란 순천시민이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입장료 면제 (제6조 관련)

1. 국민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이하의 사람
4.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나. 같은 법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가.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나.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의사자. 다만, 의사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나. 의사자유족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다.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1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

14.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

1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16.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17.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

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9. 학생 교육 활동을 위해 단체 입장하는 경우 인솔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 학교, 초·중·고 교원

20.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21.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22. 한복을 착용한 사람(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에 한한다)
23. 「관광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사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어린이”란 <u>초등학생 및 7세이상 12세이하</u> 의 자를 말한다.	2. ----- <u>초등학생 및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u> -----.
3. “청소년”이란 <u>13세이상 18세이하</u> 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 <u>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u>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어른”이란 <u>19세이상 64세이하인</u> 자를 말하며, <u>65세</u> 이상인 자는 경로 대상으로 한다.	5. ----- <u>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u> ----- <u>만 65세</u> ----- -----.
6. ~ 12. (생략)	6. ~ 12. (현행과 같음)
제3조(관람, 매표 및 주차장운용 시간) ① 관광용 시설물의 관람, 매표 및 부설주차장 운용 시간은 09:00~ <u>20:00</u> 까지로 한다.	제3조(관람, 매표 및 주차장운용 시간) ① ----- ----- <u>18:00</u>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설>	제4조의3(<u>순천시민 1년 회원권</u>) 시장은 <u>순천시민의 관광복지를 위해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 대해서는 별표5와 같이 순천시민 1년 회원권을 운영할 수 있다.</u>
제5조(입장권, 주차권 및 이용권)	제5조(입장권, 주차권 및 이용권)

현행	개정안
① ~ ③ (생략) ④ 입장권 및 이용권은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그리고 개인 입장권 및 이용권과 단체 입장권 및 이용권, <u>통합입장권</u>으로 구분하여 각 장마다 연간 일련번호를 붙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⑦ 입장권, 주차권 및 이용권은 발매 당일 개방시간에 한하여 유효하며, 오손·절취·검표된 입장권, 주차권 및 이용권은 무효로 한다. 다만, 통합입장권의 경우는 발매 다음날 <u>개방시간까지</u> 유효하다. ⑧ (생략) 제6조(입장료, 이용료 면제) <u>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료,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드라마 촬영장 입장료는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한하여 50%를 감면한다.</u> 1. <u>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u> 2. <u>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u> 3. <u>보호자를 동반한 만6세 이하의 어린이</u> 4. 「<u>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u>」에 따른 <u>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자</u>. 다만, 애국지사과 상이등급 1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통합입장권, 순천시민 1년회원권</u>-----.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u>개방시간까지, 순천시민 1년회원권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u> -----. ⑧ (현행과 같음) 제6조(입장료 감면) ① <u>시장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6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u> 1. ~ 11. <삭제>

현행	개정안
<u>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u>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 6.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노인 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8.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9.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 10.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11.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신분증,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입장하여야 한다. ③ 드라마 촬영장 입장료는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하여 50%를 감면한다. ④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별표 2] 주차료 (제4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2] 주차료 (제4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관광용시설별	구분	기본료 (1시간)	1일 주차권	비고	관광용시설별	구분	요금	비고	
드라마촬영장	소형	500	2,000	2.5톤미만(승합차 포함)	드라마촬영장	소형	1,000	11인승 미만, 2.5톤 이하 화물차	
	대형	1,500	4,000	2.5톤이상(25인승 이상)		중형	2,000	11 ~ 24인승, 2.5톤 초과 5톤 이하 화물차	
						대형	3,000	25인승 이상 5톤 초과 화물차	
비고 1. 하루에 3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게 될 때는 1일 주차권을 구입 2. 기본 1시간을 초과할 경우 매시간마다 추가요금 징수 - 소형 : 500원, - 대형 : 1,000원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급)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					<비고> 1. 주차요금의 경감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 2. 주차요금의 면제 가. 국민과 그 수행원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록표를 부착한 차량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 다.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별표 3] 이용료 (제4조제3항 관련)					[별표 3] 이용료 (제4조제3항 관련)				
☐ 드라마촬영장 (단위 : 원)					☐ 드라마촬영장 (단위 : 원)				
구분	영화	드라마	비고		구분	영화	드라마	비고	
이용료	2,000,000	800,000	1일 기준		이용료	2,000,000	800,000	1일 기준	
※ 이용료 1일 기준은 00:00 ~ 24:00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 이용료 1일 기준은 00:00 ~ 24:00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 시티투어(차량이용) (단위 : 원)					☐ 시티투어(차량이용) (단위 : 원)				
구분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비고	구분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비고
요금	5,000	3,000	2,000		요금	5,000	3,000	2,000	
☐ 문화관광 해설 (단위 : 원)					<삭제>				
기본(2시간이내)		1일(09:00~18:00)							
20,000		50,000							

현행	개정안								
<신 설>	[별표 5] 순천시민 1년 회원권 요금(제4조의3 관련) (단위 : 원) <table><tr><th>구 분</th><th>어 른</th><th>청소년 및 군인</th><th>비 고</th></tr><tr><td>순천시민 1년회원권</td><td>10,000</td><td>10,000</td><td></td></tr></table> ※ “순천시민 1년 회원권”이란 순천시민이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별표 6] 입장료 면제 (제6조 관련) 1. 국민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이하의 사람 4.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구 분	어 른	청소년 및 군인	비 고	순천시민 1년회원권	10,000	10,000	
구 분	어 른	청소년 및 군인	비 고						
순천시민 1년회원권	10,000	10,000							
<신 설>									

현행	개정안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나. 같은 법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나.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현행	개정안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나. 의사자유족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다.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 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1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 14.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 1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16.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17.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 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

현행	개정안
	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9. 학생 교육 활동을 위해 단체 입장하는 경우 인솔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초·중고 교원 20.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21.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22. 한복을 착용한 사람(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에 한한다) 23. 「관광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단체관광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사람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순천시민 1년회원권)
 - 1년회원권 RFID카드 제작에 따른 비용 발생 및 1년회원권 수요 증가 예상
 - 1년회원권 시행으로 순천시민 성인, 청소년·군인 수입 감소 예상
-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별표6(관람료 면제) 중 12.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3.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 신규 무료규정 추가로 입장료 수입 감소 예상
-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 주차장 이용료
 - 주차장 이용료 상승으로 수입 증가 예상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 상

- 순천시민 1년회원권 발급에 따른 제작비용 발생과 수입증가, 순천시민 성인, 청소년·군인 1년회원권 구입에 따른 입장객 수입 감소
-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감면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감면 추가
- 드라마촬영장 주차장 이용료 상승

나. 전 제

- 추계의 전제
 - 순천시민 1년회원권
 - 추계기간 동일, '17~'19년 순천만국가정원 1년회원권 수입 평균치 적용
 - 추계기간 동일, '17~'19년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순천시민 청소년·군인, 성인 입장 수입 평균치 적용

- 등록포로,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 전국 133명('20.8월 기준), 1년 1회 방문
- 등록포로 22명,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111명 * 순천시민은 없음
 - 관내 초등학생 : 추계기간 동일, '17~'19년 드라마촬영장 관내 초등학생
입장 수입 평균치 적용
 - 드라마촬영장 주차료 : 추계기간 동일, '17~'19년 드라마촬영장 주차료 평균치 적용
- 추계기간 : 2021년도부터 2025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495,335	99,067	99,067	99,067	99,067	99,067
세입(a)	566,425	113,285	113,285	113,285	113,285	113,285
1년회원권	646,250	129,250	129,250	129,250	129,250	129,250
시민 성인, 청소년·군인	△446,620	△89,324	△89,324	△89,324	△89,324	△89,324
관내 초등학생	△7,890	△1,578	△1,578	△1,578	△1,578	△1,578
등록포로	△1,995	△399	△399	△399	△399	△399
주차료	376,680	75,336	75,336	75,336	75,336	75,336
세출(b)	71,090	14,218	14,218	14,218	14,218	14,218
1년회원권	71,090	14,218	14,218	14,218	14,218	14,218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71,090	14,218	14,218	14,218	14,218	14,218
시 비	71,090	14,218	14,218	14,218	14,218	14,218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순천시민 1년회원권

- 세입 산출근거 : 129,250천원('17~'19년 평균 수입액)을 5년 일괄 반영
(단위 : 천원)

평 균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비 고
129,250	132,500	137,020	118,230	

- 세입감소 산출근거 : 89,324천원('17~'19년 시민 성인, 청소년·군인 평균 수입액)을 5년 일괄 반영

(단위 : 천원)

관광지	평 균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비 고
총 계	89,324	100,133	97,024	70,819	
낙안읍성	58,907	71,084	64,211	41,428	
드라마	29,069	27,980	31,249	27,980	
뿌리깊은 박물관	1,348	1,069	1,564	1,411	

○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 세입감소 산출근거 : 1,578천원('17~'19년 평균 수입액)을 5년 일괄 반영
(단위 : 천원)

평 균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비 고
1,578	1,474	1,790	1,472	

○ 등록포로,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 세입감소 산출근거 : 399천원[3,000원(성인)x전국 133명x1회방문]을 5년 일괄 반영

○ 드라마촬영장 주차료

- 세입 산출근거 : 75,336천원
 - 경차 : 3,517천원[7,035대('17~'19년 경차이용대수)x500원]
 - 소형 : 66,278천원[59,961대('17~'19년 소형이용대수)x1,000원]
 - 중,대형 : 5,541천원[2,138대('17~'19년 대형이용대수)x2,500원(중형,대형 이용료 평균)]

○ 순천시민 1년회원권

- **세출 산출근거** : 14,218천원[1,100원(카드구입비) x 12,925명]을 5년 일괄 반영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 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illegible]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30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10. 6.

1. 개정이유

-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존속기한 도래(2020. 11. 30.)
-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현실적인 운용 및 지원을 위해 용어, 최저가격 결정시기, 기금출납원 팀장 등 변경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재연임

2. 주요내용

- 현실적인 기금 운용에 따른 일부 조문 개정(안 제2조, 제8조, 제15조)
 - (제2조제1호) 평균가격 → 평균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
 - (제2조제2호) 농수산물유통공사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제8조) 매년 하반기에 → 매년
 - (제15조제1항제2호) 기금출납원 : 농정기획팀장 → 기금업무담당팀장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4조제4항)
 - 2020년 11월 30일 → 2025년 11월 30일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위촉직 위원 재연임(안 제19조)
 - (제19조) 임기 만료된 위촉직 위원 재연임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9. 1. ~ 9. 21.)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8. 28.(여성가족과-1767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8. 24.(기획예산실-1143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8. 31.(순천시 공고 제2020-1855호)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최근 5년간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최근 5년간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2020년 11월 30일”을 “2025년 11월 30일”로 한다.

제8조 중 “매년 하반기에”를 “매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농정기획팀장”을 “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9조 중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다만, 부득이한 경우 재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순천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저가격”이란 <u>최근 5년간 도매시장 평균가격</u> 을 말한다. 2. “도매시장가격”이란 <u>농수산물유통공사</u> 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3. ~ 6. (생략)	제2조(정의) ----- -----. 1. ----- <u>최근 5년간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u> ----- -----. 2. ----- <u>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u> ----- -----. 3. ~ 6.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 ③ (생략)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0년 11월 30일</u> 까지로 하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2025년 11월 30일</u> ----- -----.
제8조(최저가격 결정) 최저가격은 최근 5년간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참고하여 <u>매년 하반기에</u>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최저가격 결정) ----- ----- <u>매년</u> -----.
제15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생략) 2. 기금출납원 : <u>농정기획팀장</u> ② (생략)	제15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 <u>기금업무담당팀장</u>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u>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제19조(위원의 임기) ----- ----- ----- -----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재연임할 수 있으며, <u>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307호
----------	--------

○ 제출자 : 순천시 장

○ 제출일시 : 2020. 10. 6.

1. 개정이유

- 1천만 관광시대를 연 순천시민 자부심 고양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순천시민 1년 회원권 발행에 앞서 개별법에서 규정한 무료 관람 조항을 신설
- 낙안읍성 원형보존을 위해 불편한 거주 여건을 감수하며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문화재보전관리비는 관람료 징수 등락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는 구조로, 보다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지원대책 마련

2. 주요내용

- 개별법에서 규정한 무료 관람 조항 신설(안 제9조, 별표 1, 별표 3)
- 문화재보전관리비 산출 방식 개선(안 제23조)
 - (현행) 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 관람료 수입금의 100분의 35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 (개정) 전년도 지급액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물가 변동률을 곱한 금액. 다만, 물가 변동률을 곱한 금액이 전년도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전년도 금액으로 지급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48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및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7. 14. ~ 8. 3.)결과

- 관광과(반영)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및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국·공립수목원의 무료입장과 관련하여, 낙안읍성은 국·공립수목원 또는 국·공립정원에 해당하지 않은 관광지이므로 숲사랑지도원, 숲사랑지도위원회에 대한 무료입장 규정 신설은 맞지 않음

- 사회복지과(반영)

☞ ‘국가유공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제9조(무료관람)에 보존관련 개별법상의 무료관람 대상자 열거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7. 1.(여성가족과-1321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7. 13.(순천시 공고 제2020-1488호)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7. 20.(기획예산실-9864호)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낙안읍성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무료관람) 별표 3에 따른 무료관람대상자에게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8호의 사업비는 전년도 지급액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물가 변동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물가 변동률을 곱한 금액이 전년도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전년도 금액으로 지급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람 요금표(조례 제5조)

구분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4,000원	2,500원	1,500원
단체	3,000원	2,000원	1,000원
순천시민 50% 할인 (단,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 순천시민은 무료로 한다)			

※ 시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율을 정하여 감면할 수 있다.

[별표 3]

무료관람 대상자(조례 제9조)

1. 국민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이하의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
5.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을 소지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
6.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나 그 세대원
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8. 낙안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9.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
10. 학생 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시설 교사를 포함한다)
11. 한복을 착용한 사람(1월 1일, 설날·추석 연휴에 한한다)
12. 「관광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사람
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4.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
15. 어린이날 입장하는 만 18세 미만의 사람
16.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현역 군인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선 순위자. 이 경우 선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 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과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1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 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2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나.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 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 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2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나.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다.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2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등록포로

나.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2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u>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u> 2. <u>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u> 3. <u>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u> 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중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다만,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 해당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 6. <u>주민등록증 또는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u> 7.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나 그 세대원 8. <u>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u> 9. <u>낙안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u> 10.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 11.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제9조(무료관람) 별표 3에 따른 무료 관람대상자에게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안
12. <u>학생 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시설 교사를 포함한다.)</u> 13. <u>한복을 착용한 사람(1월 1일·설날 및 추석 연휴에 한한다.)</u> 14. 「관광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u>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광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사람</u> 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u>생계·의료급여 수급자</u> 16. <u>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제23조(관람료 등의 사용) ① 관람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7. (생략) 8. 낙안읍성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문화재보존관리비 및 자녀학자금의 일부지원 9.~12. (생략) ② 제1항제8호의 사업비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 <u>관람료 수입금의 100분의 35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u>	제23조(관람료 등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1.~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8호의 사업비는 전년도 지급액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이 전년도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전년도 금액으로 지급한다.

현행	개정안																											
[별표 1]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람 요금표(조례 제5조 관련). <table><tr><th>구분</th><th>어른</th><th>청소년 및 군인</th><th>어린이</th><th>비고</th></tr><tr><td>개인</td><td>4,000</td><td>2,500</td><td>1,500</td><td>순천시민 50% 할인</td></tr><tr><td>단체</td><td>3,000</td><td>2,000</td><td>1,000</td><td></td></tr></table> ※ 시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금을 정하여 감면할 수 있다.	구분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비고	개인	4,000	2,500	1,500	순천시민 50% 할인	단체	3,000	2,000	1,000		[별표 1]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람 요금표(조례 제5조) <table><tr><th>구분</th><th>성인</th><th>청소년·군인</th><th>어린이</th></tr><tr><td>개인</td><td>4,000원</td><td>2,500원</td><td>1,500원</td></tr><tr><td>단체</td><td>3,000원</td><td>2,000원</td><td>1,000원</td></tr></table> 순천시민 50% 할인 (단,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 순천시민은 무료로 한다) ※ 시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금을 정하여 감면할 수 있다.	구분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4,000원	2,500원	1,500원	단체	3,000원	2,000원	1,000원
구분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비고																								
개인	4,000	2,500	1,500	순천시민 50% 할인																								
단체	3,000	2,000	1,000																									
구분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4,000원	2,500원	1,500원																									
단체	3,000원	2,000원	1,000원																									
<신설>	[별표 3] 무료관람 대상자(조례 제9조) 1. 국민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이하의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 5.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을 소지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 6.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나 그 세대원 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8. 낙안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9.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 10. 학생 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시설 교사를 포함한다) 11. 한복을 착용한 사람(1월 1일, 설날·추석 연휴에 한한다) 12. 「관광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사람 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4.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 15. 어린이날 입장하는 만 18세 미만의 사람 16.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현역 군인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선 순위자. 이 경우 선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 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1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 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2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2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나.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 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현행	개정안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 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2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나.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다.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2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등록포로 나.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2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순천시 낙안읍성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낙안읍성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3 제14호 및 제24호 신설 등 무료관람 대상 확대에 따른 관람료 수입금 감소
 - (제14호)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
 - (제24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가. 등록포로 / 나.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 순천시 낙안읍성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조(관람료 등의 사용)제2항에 따른 세출 증가
 - 전년도 지급액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물가 변동률을 곱한 금액
 - 물가 변동률을 곱한 금액이 전년도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전년도 금액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관람료 무료감면 대상 확대

-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 감면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이하 “국군포로등”이라 한다) 감면
- 국군포로등의 관람료는 일반권(개인·어른)을 적용하고 1년에 1번 방문하는 것으로 가정
- ※ 국가유공 관련 다음 무료대상자는 현재도 감면(국가유공자증 소지자)중으로 비용추계 생략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각각에 따른 국가유공자

나. 문화재보전관리비 산출 방식 개선

- 관람료 수입금의 35% ⇒ 전년도 지급 금액 대비 물가변동률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95,575	△19,115	△19,115	△19,115	△19,115	△19,115
세 입(a)	△29,130	△5,826	△5,826	△5,826	△5,826	△5,826
어 린 이	△26,470	△5,294	△5,294	△5,294	△5,294	△5,294
국군포로등	△2,660	△532	△532	△532	△532	△532
세 출(b)	66,445	13,289	13,289	13,289	13,289	13,289
문화재보전비	66,445	13,289	13,289	13,289	13,289	13,289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66,445	13,289	13,289	13,289	13,289	13,289
시 비	66,445	13,289	13,289	13,289	13,289	13,289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추계의 방법

○ 순천시민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관람료 수입금은 2017~2019년 까지 3개년도 평균 수입금 5,294천원 적용

- 최근 3년간 순천시 거주 어린이(만 7세 이상 ~ 만 12세 이하) 관람료 수입금 현황

평 균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비 고
5,294천 원	6,341천 원	5,660천 원	3,881천 원	

○ 국군포로등의 수는 2020년 8월 기준 133명 적용

- 등록포로 22명,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111명 ※ 순천시민 없음

○ 문화재보전관리비는 최근 3년간(2017~2019년) 평균 지급액 464,665천원, 평균 물가상승률 2.86% 적용

- 최근 3년간 지급액

평 균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비고
464,665천 원	474,762천 원	435,252천 원	483,982천 원	

- 최근 3년간 물가변동률

평 균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비고
2.86%	3.1%	2.9%	2.6%	

나. 비용추계 결과

【세입】 총 29,130천원(연평균 5,826천원) 감소

○ 관람료 수입금 감소

- (연간 순천시민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 감면액 + 국군포로등 감면액) × 5년
⇒ (5,294천원 + 532천원) × 5년
- 순천시민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 감면액 : 5,294천원
- 국군포로등 감면액 : 532천원
⇒ 국군포로등 인원수 × 일반권(개인·어른) 요금 × 방문 횟수
⇒ 133명 × 4,000원 × 1회 = 532천원

【세출】 총 66,445천원(연평균 13,289천원) 증가

○ 문화재보전관리비 추가 소요액

- ⇒ [(최근 3년 평균지급액 × 최근 3년평균 물가변동률) - 최근 3년 평균지급액] × 5년
⇒ [(464,665천원 × 102.86%) - 464,665천원] × 5년 = 66,445천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 장 김해중(☎ 749-8835)
사업팀장 최희섭(☎ 749-8837)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311호
----------	--------

발의연월일 : 2020. 10. 7.

김미연 의원, 나안수 의원

김미애 의원, 이영란 의원

발 의 자 : 박계수 의원, 이복남 의원

최병배 의원, 김병권 의원

박혜정 의원, 오행숙 의원

정홍준 의원, 장숙희 의원

1. 개정이유

-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 내 각종 조형물 설치시 순천만 국가정원운영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통해 정원의 품격을 높이고 국내 대표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순천만국가정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국가정원 내 각종 조형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22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정원 내 각종 조형물 설치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설치 및 기능) (생략) 1.~5. (생략) 6. <u>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u>	제22조(설치 및 기능)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u>국가정원 내 각종 조형물 설치에 관한 사항</u>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숙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3312호
----------	--------

발의연월일 : 2020. 10. 8.

발 의 자 : 장숙희 의원, 김미연 의원
오행숙 의원, 이현재 의원
서정진 의원, 강형구 의원

1. 개정이유

- 저장시설 중 농업용 건조시설은 건폐율 산정시 제외되도록 하여 농업인의 영농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우리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작물의 준용범위에 농업용 건조시설은 제외토록 단서 조항 마련(안 제34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순천시 건축 조례」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 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농업용은 제외한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 제1항 제9호의 ----- -----. 1. (생략) 2. 저장시설 : <u>건조시설</u> ,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4. (생략)	제34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 -----. 1. (현행과 같음) 2. 저장시설 : <u>건조시설(농업용은 제외한다)</u> ,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4. (현행과 같음)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홍준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3313호
----------	--------

발의연월일 : 2020. 10. 8.

정홍준 의원, 장숙희 의원
발의자 : 박종호 의원, 김미연 의원
강형구 의원, 허유인 의원

1. 개정이유

- 폐기물 처리, 재활용 등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무분별한 신축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거여건 및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함

2. 주요내용

- 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안 제20조의3)
 - 도로에서 200m 이내에 입지제한
 - 10호 이상 인가로부터 1,000m 이내 입지제한
 - 2호 이상 10호 미만 인가로부터 500m 이내 입지제한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① 자원순환관련시설 허가 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20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② 자원순환관련시설(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에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가장 가까운 인가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가.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 나. 2호 이상 10호 미만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3(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① 자원순환관련 시설 허가 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20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② 자원순환관련시설(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에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가장 가까운 인가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나. 2호 이상 10호 미만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30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10. 6.

1. 개정이유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어려운 한자어) 반영
- 기계식주차장 설치가능지역 확대

2. 주요내용

- 어려운 한자어 정비(안 제10조)

- 도로폭의 ‘폭원’ → 도로폭의 ‘너비’

- 기계식주차장 설치대상지역 중 주거지역 세분화(안 제12조, 별표4)

- 도시계획법에 의거 주거지역 중 상업적 성격이 강한 준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기계식주차장 설치가능토록 세분화

(준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제2종일반주거>제1종일반주거>제2종전용주거>제1종전용주거)

- 기존 :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중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개정 :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지자체 사례비교

구 분	설 치 기 준	비 고
여주시, 화성시, 부천시	•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안양시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제2종 일반주거, 제3종일반주거	
정읍시, 군산시, 전주시	• 상업지역, 주거지역 중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8. 31. ~ 9. 21.)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9. 1.(여성가족과-1801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8. 31.(기획예산실-1176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8. 31.(순천시 공고 제2020-1827호)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도로폭의 폭원”을 “도로폭의 너비”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4]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12조제3항 관련)

구 분	내 용	비 고
1. 설 치 가능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u>준주거지역</u> , <u>제2종일반주거지역</u> , <u>제3종 일반주거지역</u>	
2. 설치가능 시 설 물	가. 상업지역 및 <u>준주거지역</u> 내 모든 건축물 나.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연면적1천㎡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 다.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	
3. 설치대수	가.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 한 설치기준의 10대 이하는 모든 대수를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 나.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 한 설치기준의 11대 이상은 기계식주차장비율 최대 50%이하까지 설치(소수점이 생길 경우 0.5대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다 만,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30%이하까지 설치 다. 단순 2단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의 주차대수는 1대로 인정	
4. 예 외	「주차장법」제19조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 건축물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폭의 폭원,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①----- ----- ----- 도로폭의 너비, ----- -----. ② (현행과 같음)																														
[별표 4]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table><tr><th>구분</th><th>내용</th><th>비고</th></tr><tr><td>1. 설치 가능지역</td><td>「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중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td><td></td></tr><tr><td>2. 설치가능 시설물</td><td>가. 상업지역내 모든 건축물 나.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연면적1천㎡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 다.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td><td></td></tr><tr><td>3. 설치대수</td><td>가.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10대 이하는 모든 대수를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 나.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11대 이상은 기계식주차장비를 최대 50%이하까지 설치(소수결이 생길 경우 0.5대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다만,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30%이하까지 설치 다. 단순 2단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의 주차대수는 1대로 인정</td><td></td></tr><tr><td>4. 예외</td><td>「주차장법」제19조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td><td></td></tr></table>	구분	내용	비고	1. 설치 가능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중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2. 설치가능 시설물	가. 상업지역내 모든 건축물 나.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연면적1천㎡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 다.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		3. 설치대수	가.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10대 이하는 모든 대수를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 나.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11대 이상은 기계식주차장비를 최대 50%이하까지 설치(소수결이 생길 경우 0.5대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다만,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30%이하까지 설치 다. 단순 2단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의 주차대수는 1대로 인정		4. 예외	「주차장법」제19조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table><tr><th>구분</th><th>내용</th><th>비고</th></tr><tr><td>1. 설치 가능지역</td><td>「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td><td></td></tr><tr><td>2. 설치가능 시설물</td><td>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내 모든 건축물 나.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연면적1천㎡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 다.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td><td></td></tr><tr><td>3. 설치대수</td><td>가.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10대 이하는 모든 대수를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 나.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11대 이상은 기계식주차장비를 최대 50%이하까지 설치(소수결이 생길 경우 0.5대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다만,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30%이하까지 설치 다. 단순 2단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의 주차대수는 1대로 인정</td><td></td></tr><tr><td>4. 예외</td><td>「주차장법」제19조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td><td></td></tr></table>	구분	내용	비고	1. 설치 가능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2. 설치가능 시설물	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내 모든 건축물 나.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연면적1천㎡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 다.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		3. 설치대수	가.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10대 이하는 모든 대수를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 나.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11대 이상은 기계식주차장비를 최대 50%이하까지 설치(소수결이 생길 경우 0.5대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다만,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30%이하까지 설치 다. 단순 2단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의 주차대수는 1대로 인정		4. 예외	「주차장법」제19조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분	내용	비고																													
1. 설치 가능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중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2. 설치가능 시설물	가. 상업지역내 모든 건축물 나.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연면적1천㎡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 다.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																														
3. 설치대수	가.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10대 이하는 모든 대수를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 나.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11대 이상은 기계식주차장비를 최대 50%이하까지 설치(소수결이 생길 경우 0.5대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다만,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30%이하까지 설치 다. 단순 2단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의 주차대수는 1대로 인정																														
4. 예외	「주차장법」제19조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분	내용	비고																													
1. 설치 가능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2. 설치가능 시설물	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내 모든 건축물 나.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연면적1천㎡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 다.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																														
3. 설치대수	가.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10대 이하는 모든 대수를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 나.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11대 이상은 기계식주차장비를 최대 50%이하까지 설치(소수결이 생길 경우 0.5대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다만,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30%이하까지 설치 다. 단순 2단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의 주차대수는 1대로 인정																														
4. 예외	「주차장법」제19조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305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10. 6.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체계 개선 권고

2. 주요내용

-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을 “공공하수도로 부터 3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로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조)
- “법 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로 하여 사용료 징수 대상을 명확히 규정(안 제16조)
- 감면대상을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을 삭제하고, 감면 대상과 감경량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8조, 별표 7)
-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구체적 불복 절차 규정 마련(안 제29조)
- 과오납 사용료 환급절차 및 소멸시효 규정 마련(안 제31조, 제32조)
- 준용 규정을 「지방세법」에서 「지방세 기본법」으로 변경(안 제40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및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8. 1. ~ 8. 21.)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7. 10.(여성가족과-1387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7. 22.(기획예산실-993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7. 30.(순천시 공고 제2020-1601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를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 징수한다”로 한다.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부터 제41조까지를 각각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로 하고, 제31조 및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32조(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 3년
2. 제1호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 된 하수도 사용료 : 5년

제42조(중전의 제40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제28조)

감 면 대 상	감 면 기 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 재난지역의 대상자	전액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사용료의 20%

※ 공공하수도 부과액 = 공공하수도 사용료 - 감면액(감면기준에 따른 금액)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 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 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 부터 <u>300</u> <u>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u>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 ----- ----- <u>직</u> <u>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u>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u>법 제1</u> <u>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u> <u>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u> <u>수한다.</u> ②~③ (생략)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 ----- <u>공공</u> <u>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u> <u>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 징</u> <u>수한다.</u>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감면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 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 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 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공공하수 도 사용료 등 감면기준은 별표7과 같다.	제28조(감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 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9조(이의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 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법」 제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u><신설></u>	제29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현행	개정안
<u><신 설></u>	<u>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u> <u>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u><신 설></u>	<u>제31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u> <u>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32조(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u> <u>1.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 3년</u> <u>2. 제1호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 5년</u>
<u>제31조 ~ 제39조 (생략)</u>	<u>제33조 ~ 제41조 (현행 제31조 부터 제39조까지와 같음)</u>
<u>제4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u>	<u>제42조(준용규정) -----</u>

현행	개정안
료, 사용료, 부담금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한다. 다만, 과태료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다.	----- ----- 「지방세기본법」----- ----- -----.
<u>제41조</u> (생략)	<u>제43조</u> (현행 제41조와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 7]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기준		[별표 7]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제28조)	
구분 업종	감면비율		
	빗물 이용 시설	중수도	재처리수
가정용	20%	20%	20%
일반용	20%	20%	20%
욕탕용	20%	20%	20%
산업용	20%	20%	20%

감면대상		감면기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 재난지역의 대상자		전액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빗물 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 받는 자		사용료의 20%

※ 공공하수도 부과액 = 공공하수도 사용료 - 감면액(감면기준에 따른 금액)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30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10. 6.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개정('16. 1. 27.)되어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 설치 조항 삭제
- 행정안전부 ‘지자체 위원회 운영실태 및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정비 (최근 3년간 미개최 또는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2. 주요내용

- 관리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제12조~제17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8. 13. ~ 9. 2.)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8. 6.(여성가족과-14159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8. 10.(기획예산실-1083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8. 13.(순천시 공고 제2020-1721호)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맑은물관리센터 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2. 물 재이용시설 및 도시계획관련 업무 담당과장 3. 물 재이용시설 및 도시계획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의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삭 제>

현행	개정안
<u>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u>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u> <u>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	<삭 제>
<u>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u> <u>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삭 제>
<u>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u>	<삭 제>
<u>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	<삭 제>